

2023. 9. 1.자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I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6(공모 교장의 임용·평가, 자격기준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3.1.18.)
- 2023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부 교원정책과-7529, 2022.10.14.)

II 목적

-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
-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 사회의 활력 제고

가. 공모학교 지정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나. 공모 교장 지원 서류 전국단위 표절 검증

- 교육청에 공모 교장 표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공모 교장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 등 엄중 조치

다. 강화된 교장 임용제청 배제기준 적용

- 교육감(교육장)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임용제청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 임용제청 추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자격 박탈
- 징계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공모 지원 제한
단, 4대비위* 관련자는 징계 말소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지원 제한
* 4대비위: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조작
- 2022.1.1. 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 처분을 받은 자는 공모 지원 제한

라. 공모 실시 학교 신청 절차를 위한 학부모 참여 과정 지원

-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 의견수렴용 가정통신문 예시(안)를 단위학교에 제공
- 학부모 의견수렴은 코로나19 감염병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

마. 내부형(B) 유형 지정 기준

- 신청학교 중에서 교장공모제 찬성률, 내부형(B) 유형 찬성률 등을 고려하여 학년도별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지정

바. 현임교 지원 제한

- 모든 교장공모제 유형에서 현임교 지원 제한

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비공개

- 학교 심사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음

1 공모 교장 운영 개요

가. 공모 교장 임용기간

- 2023.9.1. ~ 2027.8.31.(4년)
 - ※ 단, 임기 중 퇴직 등 교장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임기 종료
 - ※ 정년이 4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 동안 임용

나.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지정 규모

-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3년 8월말 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 등)의 1/3 ~ 2/3의 범위*에서 교장공모 학교 지정
- * 차기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 계획 수립 시 지정비율 범위 검토 예정

다.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

- 정년퇴직,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4년) 등으로 2023.9.1.자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하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장공모제 운영 대상교에서 제외 가능
 - 교장 정기전보로 인한 결원 발생 학교 중에서 현임 교장의 정년 잔여 또는 중임만료 임기가 2년 이하(단, 강동송파, 강남서초 중등학교는 1년 이하)인 경우
 - 학교 통·폐합, 휴교 예정으로 공모교장 임용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 ※ 교장 정기전보로 인한 결원 발생 학교 중에서 현임 교장의 정년 잔여 또는 중임만료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교장공모제 운영 대상교에서 제외(중등교육과-369921, 2022.10.25.)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개방형으로 의무 지정
 - ※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2항제5의2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제1항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영재학교는 별도의 지정 승인 절차 없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3항에 따라 교장공모 실시
 - ※ 근거: 교육부 교원정책과-295, '22.1.13.
- 신설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 시행

○ 학교 유형별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준)

학교유형	신청 대상 학교	공모 신청유형
일반학교	초 52교, 중 38교, 고 17교	초빙형
자율학교	초 32교, 중 5교, 고 4교	내부형(A) 또는 내부형(B)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	개방형

라. 학교 유형별 공모 유형 및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학교 유형	공모 유형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자율학교	내부형(A)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내부형(B)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포함)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 개방형의 공모 범위는 전국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 2023.9.1.자 학교 유형에 따라 공모 유형이 결정됨
-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 운영 신청 시, 공모 유형을 내부형(A) 또는 내부형(B)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 내부형(B) 유형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 가능하며, 해당 공모 유형 지정을 신청한 학교 중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 로 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운영 가능(학년도별 내부형 신청 학교 수의 50% 범위에서 지정)

마.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절차

-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는 지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학교 신청에 대한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 및 지정 절차

순서	절 차	일반학교, 자율학교
1	학교 구성원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교장공모제 운영 여부를 결정 ○ 교직원 의견수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교직원의 의견수렴은 코로나19 감염병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신망 활용 등의 방식으로 운영 가능 ※ 교직원의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거권자 ○ 학부모 의견수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가정통신문으로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 학부모 의견수렴 시 반드시 공모 교장 유형별 자격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함께 제공 ※ [참고자료 서식 7 (의견수렴용 가정통신문 예시) 활용] - 학부모 의견수렴은 코로나19 감염병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 ○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 가능, 해당 학교에서 결정 ○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
2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여부 심의 ○ 지정 신청 시에는 공모 유형 및 공모 요건 심의 ○ 지정 신청 시에는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비율 심의 (세부내용은 11쪽, [참고자료3]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교장공모제 추진 시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과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학교장 및 소속 교육(지원)청에 제출
3	지정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공모 유형 및 공모 요건 포함) 승인 신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장공모제 미신청으로 결정된 경우, 심의 서류는 자체 보관하고 교육청 제출 서류는 없음
4	지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 운영 신청 사항 심의 후, 공모 지정 여부 통보

※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관련 각종 서류는 감사 등에 대비하여 1년간 학교 자체 보관 철저(신청하지 않은 학교 포함)

바. 공모 요건 작성 방법

- 해당 학교의 지역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 학교교육과정, 학교 특성, 공모 교장의 필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나이, 성별, 경력, 학력, 출신 등 학교경영능력과 무관한 내용은 공모
요건이 될 수 없음

○ 추상적인 공모 요건 금지

(예) 창조적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사. 교육청에서의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통보

○ 신청한 학교 중 정년퇴직과 중임만료, 공모만료, 정기전보 등으로 인한
교장결원의 1/3 ~ 2/3 범위에서 교장공모 학교로 지정·통보

○ 학교교육력 제고 또는 교육 혁신 등 학교 발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학교는 학교 여건, 교육 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모
학교로 지정

○ 임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 수가 적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 여건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 지정

○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B) 유형 학교로 지정

※ 비율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 신청 학교 수의 50% 범위로 산정

< 내부형(B) 유형의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내부형(B) 유형으로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정
- '내부형(B)' 유형 신청 학교가 1개뿐인 경우, 신청 학교를 '내부형(B)' 유형
으로 지정

○ 내부형(B) 유형 신청 학교 중에서 교장공모제 찬성률, (B)형 찬성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형(B) 유형을 지정

○ 신설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 시행

아. 공모 지정 철회 등

○ 교장 공모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거나 다음 학기에 공모

○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
학기에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며,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 조치

2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가. 지원 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부 및 동 소속기관으로 진출된 자 포함)으로서, 교장 공모 유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장공모제 유형별 지원 자격 기준은 6쪽의 표를 참고

※ [행정예고-중등]

- (지원 자격)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부 **본부 및 동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등)으로 진출되어 계속 근무 중인 교육전문직원 포함**)으로서, 교장 공모 유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024.3.1.자 교장공모제부터 시행

나. 지원 자격 제한

-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
 - ※ 단,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지원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등 법령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징계 말소기간 미경과자
 - ※ 단, 교원 4대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 조작)는 징계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 2022.1.1. 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적발되고 징계의결요구, 처분을 받은 자는 공모 지원 제한
- 임용예정일 기준 현 재직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
 -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 재직교에는 지원 불가
 - ※ 공모만료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전임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보된 후 3년 미만인 자
-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타 학교 공모 교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
- 현임 수석교사(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4항)
- 임용예정일 기준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자

다. 유의 사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자를 포함 (단,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미취득 시 임용 취소)
-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으로 고용휴직 이외의 다른 휴직 경력은 제외
-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응모기간 중 중복 지원 금지(지원자는 1개교에만 지원)
- (지원일 기준)교육지원청 근무 교육전문직원의 소속 지원청 내 학교 공모 신청 금지
 - ※ 위의 제한 사항 등은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됨

3 공고, 접수 및 지원 서류 공개

가.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3.5.24.(수) ~ 6.8.(목) 16시까지
- 접수: 2023.6.1.(목) ~ 6.8.(목) 9시~16시
 - ※ 토요일무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 재공고 및 접수 기간: 2023.6.9.(금) ~ 6.13.(화) 16시까지
 - ※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거나 다음 학기에 공모

나. 공고 내용

- 해당 학교의 지역 여건, 학교 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공모교장 요건을 명시
 - ※ 학교경영능력과 무관한 공모 요건은 기술하지 않음
 - ※ 추상적인 공모 요건 금지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전국단위 표절검사를 위한 자료가 됨을 공고문에 명시

다. 공고 방법

- 초등학교 · 중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고등학교: 본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 접수 기간 동안 매일 16시 이후에 당일까지 접수 누적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 심사 예정 일정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하되, 확정된 심사일정 등은 접수 기간 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라. 공모교장 지원 서류 사전 공개

공개 서류	공개 기간	문서 형태	공개 장소
자기소개서	접수마감일 다음날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익명 처리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 청 홈페이지
학교경영 계획서	접수마감일 다음날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익명 처리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원본(파일명에 실명 포함)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심사위원 이메일 등으로 익명화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제공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전국단위 표절검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
 - ※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불가, 기재한 경우 심사 시 최종점수에서 10점 감점 조치

마. 강화된 교장 임용제청 배제 기준 적용

- 교육감(교육장)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 임용제청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 자격 박탈 [8~9쪽 참고]

4 심사 및 추천 대상 선정

가. 심사 주관

심사 구분	심사위원회 명칭	심사위원회 구성
학교 심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심사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교육감(교육장)

- ※ 주관: 초등학교·중학교는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시작 당일까지 심사위원 명단 보안 철저
- 심사위원은 공모교장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
-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의 제자의 학부모 등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위촉 제한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
- 후보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상황에 따라 차후 절차 진행
- 후보자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후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반 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함
- 지원자의 명단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공개
 - ※ 지원자 명단 비공개로 사전 담합 및 로비 의혹 차단
 - ※ 명단 공개는 기피 사유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며,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와 면접 대상자는 심사 종료 시까지 관리번호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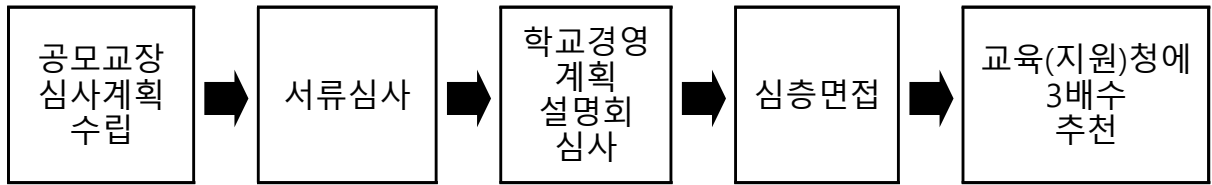
나.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 위원 구성 방법

구 분		내 용
위 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여 학교장이 위촉 ※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 등 위원별 인원을 사전에 결정(교장공모제 신청 시 학운위에서 결정)
위원구성비율	학부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교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 <u>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u>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 및 공모제 운영 담당 교원 제외) 중에서 위촉. 단, 교직원 전체회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코로나19 감염병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신망 활용 방식 등으로 운영 가능 - 공모 교장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u>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u>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게 별도 통보. 단,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자 선정
	외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0%)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 외부위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심사위원은 남녀 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급적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
- 심사위원 및 진행위원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 심사역량 강화 (심사 절차, 심사 기준, 심사 시 고려사항 등)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접수 당시 지원자가 1인이거나, 2인 이상이었다가 심사 당일 지원자가 1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함(심사 당일 지원자가 1인도 없을 경우에는 교장 공모 심사를 중단하고 교장공모 학교 지정 철회하거나 다음에 공모 실시)
- 위원 수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의 불참을 고려하여 **1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10명으로 할 경우에는 예비심사위원 확보가 필요함**

다. 학교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세부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실시

1) 교장공모 심사계획 수립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적합한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심사에 반영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학교장,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철저
-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등의 심사 단계와 방법, 그에 따른 평가영역, 배점, 동점자 순위 결정 방법 등을 포함

※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특정 심사 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단계적 심사 금지
- ※ 학교의 특정 주체(교사, 학생 등)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 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심사의 순서는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권장
- 서류심사와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는 같은 날 실시 가능하며, **심층면접은 반드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에 실시**
- 개별 지원자의 장·단점에 대해 심사위원 간 사전에 서로 협의하거나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각 심사위원의 심사에 대해 독립성 보장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서류심사

- 지원자의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기타 추천서 등을 심사
 - ※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은 기재 불가,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하였을 경우 최종점수에서 10점 감점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동료, 상사 등 주변사람들의 평가도 반영할 수 있음
-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 설명회는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최 안내
- 설명회 개최 시 과도한 자료 준비나 과열·혼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 자제 요망(PPT 등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 금지)
- 심사는 설명회에 참석한 교직원 및 학부모가 실시하며, 심사 배점은 총점의 30%~40% 범위 이내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단, 반영 비율은 교직원과 학부모 각각 50%로 함)
- 교장공모 학생 참관단 운영(학교 자율 선택)

※ 교장 공모 학생 참관단

1. 목적

- 교장 공모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관심을 신장시키고 참여 독려
- 학생의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주인정신, 참여정신 배양

2. 역할

- 공모교장 학교경영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원자의 발표 경청(단, 심사권은 없음)

3. 학생 참관단 구성

-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공모에 적용**
-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자발적 구성, 지도교사 지정

4. 참관단 구성 여부 및 참관 인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학생자치회에서 결정

※ **설명회 개최 시 참고 사항**

- 설명회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원(지지)하는 외부인 참관 통제(단, 시민참관제 운영으로 참관이 허용된 자는 입장이 가능하나 심사권은 없음).
- 시민참관제 운영 시 선동하는 참관인은 퇴장시킬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 설명회 심사 교직원의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거권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설명회 심사 시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생의 1가족 당 1표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심층면접**

- 지원자의 인성, 도덕성, 위기관리능력,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리더십, 교육격차 해소 전략 등을 심사
- 지원자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시간(지원자 1인당 30분 등)을 할당하여 역량을 충분히 평가

5)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비공개**

- 심사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교육(지원)청에 추천(3배수 범위 내)**

- 학교 심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① 학교운영위원회장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② 학교장은 상위 3인의 순위와 최종 점수(100점 만점)를 명기하여 교육(지원)청에 추천

- 지원자(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지원)청 심사 대상자로 추천
※ 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지원자 수와 무관하게 추천 제외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심사 결과 보고 후에, 지원자의 추천 여부 결과를 지원자별로 안내
- 학교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 취소 요청 또는 다음 학기 공모 신청

※ **공모교장 지원자가 없거나, 학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은 공모 학교 지정 취소 요청 또는 다음 학기 공모 신청
- 다음 학기에 교장 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에는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며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 조치

- 공모 절차 완료 후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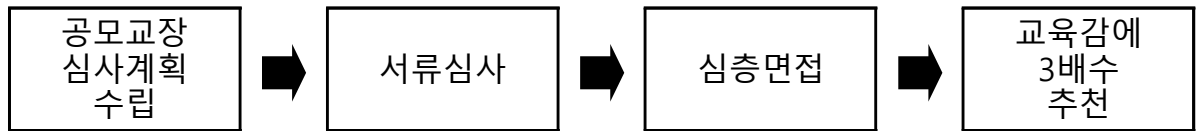
7) **공정한 학교 심사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교 심사에 대하여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서식 6-2)

라.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구성·운영(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별도 구성)
- 평가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등)을 50% 이상으로 함
 - *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제척 등 엄격히 적용
- 평가위원은 남녀 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급적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도, 교육(지원)청 심사를 실시

마. 교육(지원)청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 세부 사항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실시

1)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 학교 심사 결과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적격성 여부 및 학교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 평가
- 후보자 3인의 최종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교육(지원)청에 제출된 학교 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서식 6-2) 등을 이용하여 공모 교장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 교육(지원)청 심사 과정에 대한 초·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의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서식 6-3)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 거부

2) 교육감에게 추천(3배수 범위 내)

-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한 뒤 각 후보자의 점수와 순위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
- ※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1:1 비율로 반영,
학교와 교육청 심사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합산
- 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감에게 추천
- 심사 종료 후 학교 심사 점수를 교육청 심사위원회에게 공개
- 심사 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 교장 자격에 미달(점수가 85% 미만인 경우)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3) 심사 결과에 반영할 사항

- 표절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
- 「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 지침」 상의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여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말소기간 재확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상의 승진임용제한 여부 확인 등

바. 교육감의 공모 교장 임용제청 추천

-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 교육감이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순위자 중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교육감은 일정 점수(85%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 철회
- 교육청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현임교 또는 전임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판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청 심사 집계표 등의 심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

사.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1) 심사위원 역량 강화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연수를 반드시 실시

2) 학교경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

-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한 경우 최종점수에서 10점 감점 처리

3) 사전 심사위원 접촉 제한

- 공모 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공모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음

4) 지원 자격에 대한 철저한 확인

- 교육감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추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제청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자격 박탈

5)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 조정

-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집계

※ 심사 결과 집계 시 유의 사항

- 각 심사유형별로 심사위원 평가점 중 위원수의 10%에 해당하는 상위 점수와 위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하위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처리함 (※ 제외 인원은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1명 미만은 1명으로 함)
- 학교 심사
 - 심사위원 수 14명 이하: 최고 점수 1명, 최하 점수 1명 제외
 - 심사위원 수 15~20명: 최고점으로부터 2명, 최하점으로부터 2명 제외
- 교육(지원)청 심사
 - 심사위원 수 7명: 최고점 1명, 최하점 1명 제외

6) 시민참관제 운영

- 학교·교육(지원)청에서 공모교장 심사과정(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중 참관이 가능한 심사영역에 학부모, 교원단체, 지역인사 등 희망자 심사과정 참관 허용
- 시민참관제 운영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 심사 시 참관 희망 교원에 대해 출장(여비부지급) 인정으로 참여 활성화
- 면접실 규모 등 학교·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참관 인원과 참관 방법은 추후 결정

7) 이의제기 기간 운영

- 공고 시 이의제기 신청기간 안내: 6.27.(화)~6.29.(목) 16시까지
- 접수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업무메일
- 심사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접수된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조사·조치하고 교육청에 보고

8)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심사가 끝난 후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공개
- 공개기간: 공모 교장 임용 추천일 ~ 공모 교장 임용일
- 공개장소: 본청 홈페이지
- 공개내용: 최소한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부분공개
-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9) 공정한 심사·선정 절차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교 심사에 대하여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시식 6-2)
- 교육(지원)청 심사 과정에 대한 초·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의 모니터링, 심사 점검표 작성·제출(시식 6-3)
-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공모 철회 또는 취소

5 표절검사 및 처분 기준

가. 서약서 징구

-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 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 감수에 대한 서약 내용을 지원서에 포함하여 징구

나. 조치

-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
※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다.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기구: 본청에 공모 교장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5명 이내)
※ 초·중등 별도 구성
- 심사대상: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심사기간: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대상범위: 2010.9월 이후 공모교장 임용자와 2023.9.1.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공모교장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DB(전산화) 자료
- ※ 전국단위 공모 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운영(2014.9~)
- ※ 책자, 논문, 교육청·학교 자료 등에서 인용 시에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표절로 판정될 수 있음**(본인의 저술·교육청 제출 자료 인용 시에도 출처 표시)

< 유사성 검사 처리 기준 >

- 국문: 연속동일 6어절 이상 일치할 경우 표절심사 대상영역으로 처리
- 영문: 연속동일 10어절 이상 일치할 경우 표절심사 대상영역으로 처리
- 인용 / 출처표시 문장 검사대상에서 제외
 - 인용문장 기준: double quotation 표시(“ ”)의 직접인용부분
 - 출처표시문장 기준: APA, MLA, Chicago style의 내주처리방식 기준

○ 심사위원회 표절 판정 절차

